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1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신정훈·강득구·민형배

이상식 • 위성곤 • 김현정

이광희 • 이재관 • 황명선

채현일 · 복기왕 · 양부남

한병도 · 차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 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 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 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아.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치안산업"이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 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치안사업자"란 치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치안기술"이란 치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 등 치안산업 관련 기술을 말한다.
- 4. "치안장비"란 치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 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 4.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7.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치안기술의 연구개발과 치안장비의 개발·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치안산업의 기반조성 등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을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치안장비등의 표준화)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이하 "치안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치안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 2. 치안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 · 개발
 - 3. 그 밖에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할 수 있다.
- 제9조(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 확인) ① 경찰청장은 국내에 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 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 적용 품목

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확인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신기술품목의 인증) ①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품목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품목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 또는 제11조에 따른 신기술품목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증표시)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품목 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품목(이하 "인증신품목"이라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이나 그 포장및 홍보물 등에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경찰청장은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 신기술 또는 신기술품목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인증의 취소) ① 경찰청장은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인증 신기술 및 인증신품목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1조에 따른 신기술품목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인증신품목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7조(치안사업자의 신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 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2. 치안산업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 3. 치안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 4.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 5.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치안장비등의 인증 획득 지원
 - 6.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 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 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국내 치안기술 개발 주체 에 대한 자금 지원
 - 2. 그 밖에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연구기관의 치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 2.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지원
 - 3.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입지 지원
 -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치안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

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치안산업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협회)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치안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치안기술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 2. 정책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 3. 치안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4. 치안산업의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
 - 5. 치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6. 치안장비 보급의 확대
 - 7.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8. 치안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 9. 이 법 또는 다른 치안 관계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5조(국가경찰위원회 보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보고 등) ①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관련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